

||| 목 차 |||

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(안)

- I. 추진 배경 및 경과 1
 - 1. 추진 배경 2
 - 2. 추진 경과 4
- II.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5
 - 1.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6
 - 2. 정책추진의 한계 및 개선방향 8
- III. 정책 추진방향 10
 - 1. 비전·목표 및 정책영역 10
- IV. 정책 추진과제 11
 - 1.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.. 12
 - 2.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... 20
 - 3.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26
 - 4.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31
 - 5.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37

- 붙임 1.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 41
 - 2.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(안) 43

1. 추진 배경 및 경과

1 추진 배경

□ 정책 추진현황

- '05년부터 3차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'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'(1차 : '05~'09, 2차 : '10~'14, 3차 : '15~'19)을 수립·시행하여
 -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확산*되고 학생 안전 및 상담 인프라가 확충**되는 등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 강화
 - * 예방교육(어울림) 프로그램 운영 학교 : ('14) 502교 → ('19) 4,506교
 - ** 학교CCTV : ('14)164,282대 → ('19)255,638대 / 전문상담교사 : ('14)2,099명 → ('19)3,396명
- '19년 제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학교폭력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부처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
 - 특히, 인프라 구축에 상응하는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('20~'24) 추진할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

(법적 근거)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·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정책환경 변화

- (학교폭력 양상)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, 언어 폭력·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부각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
 - '학교폭력 실태조사'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·고등 학생 피해응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 - ※ 초등학교 : ('17) 2.1% → ('18) 2.8% → ('19) 3.6%
 - 중학교 : ('17) 0.5% → ('18) 0.7% → ('19) 0.8%
 - 고등학교 : ('17) 0.3% → ('18) 0.4% → ('19) 0.4%
 - 사이버폭력 비중이 신체폭행 비중보다 높아*지고 정서적 폭력(언어폭력, 집단따돌림)의 비중이 증가**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국제적으로도 사이버폭력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는 추세
 - ※ 피해유형별 비중
 - ('17) 언어폭력(34.1%) > 집단따돌림(16.6%) > 스토킹(12.3%) > 신체폭행(11.7%)
 - ('18) 언어폭력(34.7%) > 집단따돌림(17.2%) > 스토킹(11.8%) > 사이버 괴롭힘(10.8%)
 - ('19) 언어폭력(35.6%) > 집단따돌림(23.2%) > 사이버 괴롭힘(8.9%) > 스토킹(8.7%)

- '제4차 기본계획'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('19.5.~12.,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)
 - 기존 학교폭력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교원·학생·학부모 설문조사 ('19.10.1.~15., 약 54,100명)
- '제4차 기본계획'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팀 구성·운영 ('19.7.~11.)
 - 학교폭력 관련 학계, 현장 교원, 유관단체, 전문가 등 31명 참여
 -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, 4차 기본계획 방향 및 과제발굴 등
- '제4차 기본계획'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('19.8.~12.)
 - 9개 관계부처*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('19.8.13.~12.17.)
 - * 과기정통부, 법무부, 행안부, 문체부, 복지부, 여가부, 방통위, 경찰청, 산림청
 - 17개 시·도교육청 과제발굴 및 검토 ('19.12.2., 12.12.~17.)
 -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(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) 협의회 ('19.12.12.)
- '제4차 기본계획'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('19.11.21)
- 학교폭력 관련 집단별 의견수렴 ('19.12.2.~13.)
 - 교원단체(한국교총, 전교조, 교사노조연맹) 의견수렴 ('19.12.2.~9.)
 - 민간단체(학교폭력 피해자단체, 학부모, 학생) 의견수렴 ('19.12.5.~13.)
- 제9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('19.12.31.~'20.1.2., 위원회 안전 사전검토)
-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('20.1.3.~10.(예정), 제4차 기본계획 심의·확정)

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」 의의

- 법적근거 :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
- 성격 :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
 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
- 절차 : 관계부처 의견 수렴,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
- 주요내용 :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, 피해학생 치료, 전문상담교사 배치, 유관기관 협력 등

- (일본) 정부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 발생건수는 '13년 8,788건에서 '17년 12,6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
 - (미국) 사이버폭력 연구센터에서 '02년부터 미국 전역 중·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율은 '07년 18.8%에서 '19년 36.5%로 증가
- (법·제도) '학교폭력예방법' 개정('19.8.20. 공포)으로, 그간의 처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, '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대처'하면서 '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'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
-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엄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, '20.3.1.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이관되며,
 -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, '19.9.1.부터 '학교장 자체해결제'가 도입되어 법률상 일정요건*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
 - * ①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,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,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,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 - 이처럼, 학교폭력 정책 패러다임이 처벌 중심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
- (프랑스) '06년에는 '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관한 '06년 시행령'을 통해 처벌과 공권력 개입을 강조하였으나, '16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, 학생 간 중재, 조치의 교육적 효과성 강조
 - (일본) 학교폭력 관련 엄벌주의 정책을 유지해왔으나, 최근 엄벌주의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
- (사회 구조)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학생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,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
- 초·중등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*됨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며,
 - * ('17) 약 58.2만 명 → ('20) 약 54.6만 명 → ('25) 약 50.9만 명(통계청 '장래인구특별추계(중위))
 - 다문화학생이 증가*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회·정서적 역량 강화가 필요
 - * ('11) 3.8만 명(전체 학생의 0.6%) → ('19) 13.7만 명(전체 학생의 2.5%)
-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'더불어 사는 사람'이 제시되고 있음

II.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

◆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('15~'19) ◆

- (비전)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
- (목표)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
- (5대 정책영역)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,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,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, 피해학생 보호·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,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

구분	제3차 계획 추진의 성과와 한계	제4차 계획에의 시사점
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수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○ 체험형 예방교육 내실화 ○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대 ○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○ 피해학생 보호·치유지원 기반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응한 예방교육 내실화 ○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전면 확대 ○ 학교폭력 사안처리 엄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현장의 역량 강화 ○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체계 구축 ○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단계적·맞춤형 지원 강화 ○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○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등 전 사회적 대응체계 공고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학교에 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○ 사이버폭력 부각 등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한 대책 필요 ○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요구 지속 ○ 지속적인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○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유도를 통한 피·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필요 ○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, 지역 사회의 역할 내실화 필요 	
한계		

1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

□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 및 예방역량 제고

- 학교폭력 예방교육(어울림)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및 교사가 수업 시간에 쉽게 활용 가능한 학생활동지 등 형태의 '교과연계 어울림' 개발·보급을 통해,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산
 - ※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: ('14) 502교 → ('19) 4,506교
 - ※ '교과연계 어울림' 프로그램 : 총 5종(중학교 국어·도덕·사회, 고등학교 국어·통합사회) 既 개발·보급
- 학교폭력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예방교육을 위한 '뮤지컬 동아리', '청소년 경찰학교' 및 학생 스스로 또래학생을 상담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'또래상담' 등 학생 참여·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
 - ※ '뮤지컬 동아리(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사업)' : ('18) 82개 → ('19) 132개
 - ※ '청소년 경찰학교' : ('14) 19개소 → ('19) 52개소
 - ※ '또래상담' 운영학교 : ('14) 6,396교 → ('19) 8,562교
- ☞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따라, 피해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는*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및 예방역량 제고
 - * '학교폭력 실태조사' 결과, 피해 시 신고비율 : ('14) 78.4% → ('19) 81.8%

□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대응기반 구축

- 학교CCTV 확대 및 고화소(100만 화소 이상) 비율 제고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교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
 - ※ 학교CCTV(고화소 비율) : ('14) 164,282대(25.2%) → ('19) 255,638대(92.7%)
- 학교전담경찰관, 학생보호인력 등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
 - ※ 학교전담경찰관 : ('14) 1,068명 → ('19) 1,138명
 - ※ 학생보호인력(배움터지킴이, 민간경비 등) : ('14) 13,379명 → ('19) 24,968명
- ☞ CCTV,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,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감소*하는 추세
 - * '학교폭력 실태조사' 결과, 신체폭행 비중 : ('14) 11.5% → ('19) 8.6%
 - 금품갈취 비중 : ('14) 8.0% → ('19) 6.3%

□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및 엄정성 강화

-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증가와 시·도 교육청별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점검 지원단 확대운영으로,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향상

※ 자치위 전문가 참여 : 법조인 ('14)1,371명 → ('19)1,944명 / 경찰 ('14)10,944명 → ('19)12,155명

※ 전국 시·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 지원단 수 : ('14) 766명 → ('19) 2,919명

- ☞ '20.3.1.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비중이 늘어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, 사안처리의 엄정성·공정성이 강화될 예정

□ 피해학생 보호·치유지원 인프라 확대

-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위(Wee)클래스·센터 및 전문상담교사 등 위(Wee)프로젝트* 확대

* Wee(We+Education+Emotion) :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·상담·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

※ 위(Wee)클래스 : ('14) 5,633교 → ('19) 7,233교 / 센터 : ('14) 188개소 → ('19) 218개소

※ 전문상담교사 : ('14) 2,099명 → ('19) 3,396명

- 시·도교육청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확대하고,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기관 모델 다양화를 추진

※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: ('14) 31개소 → ('19) 48개소

※ 지원기관 모델 예시

- 가정형 위(Wee) : 가정적 요인에 따른 위기학생에게 돌봄·상담·교육 등 서비스 제공

- 통학형·기숙형 보호기관 : 가정·학교를 일정기간 대체하고 교육·치유지원 등 서비스 제공

- 위(Wee)다터 : 도서·벽지 학생을 대상으로, 원격 화상 정신과 자문을 제공

- ☞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·치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 다양한 피해학생 지원 모델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

※ 위(Wee)클래스·센터 상담건수

- 위(Wee)클래스 : ('14) 1,714,449건 → ('19) 2,576,150건

- 위(Wee)센터 : ('14) 563,210건 → ('19) 700,031건

※ '통학형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' 1개소 신설 추진 중('20.3. 개소 예정)

2

정책추진의 한계 및 개선방향

□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예방교육 실시

- 학교폭력이 중요한 교육문제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, 1회성 집합교육 형태로 예방교육이 실시되는 현실

※ '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지' 묻는 설문에 대해, 교원 70.8%, 학생 59.9%, 학부모 79.2%가 그렇다고 응답(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설문조사, '19.10.1.~15.)

-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, 일부 교과(국어·도덕·사회)와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만 개발·보급된 상황

- ☞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, 장기적으로 국가교육과정과 연계 추진 필요

□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강화

-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, 정서적 폭력 비중이 높아지고 사이버폭력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부각되는 상황

- 특히,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·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

- ☞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산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·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, 유아와 초등 저학년부터 사회·정서 역량 함양교육 강화 필요

□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며 교육적인 학교폭력 대응체계 마련

- '학교장 자체해결제'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나, 최근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*함에 따라 국민 여론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를 요구

* 수원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('19.9.21.), 익산 중학생 폭행 사건('19.10.9.) 등

- ☞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한편,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

□ 피해학생 지원기반 확충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

- 학교폭력 피해발생 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겪게 되는 심리·정서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필요
- ☞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속 확대하며 피해발생 초기부터 보호조치 이후 사후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피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치유·지원방안 필요

□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 내실화

-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확대,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 긴급조치 부여 등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제도·인프라 마련에 중점을 두어왔으나, 반성을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
- ☞ 사회봉사·특별교육 등 가해학생 조치가 교육·선도를 통한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, 가해학생 조치 이행 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

□ 가정, 지역사회 전반의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

- 교원·학생·학부모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'가정에서의 인성 교육 부족'과 '폭력적인 문화 및 대중매체의 영향'으로 인식
 - ※ '학교폭력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'에 대한 응답 결과 (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설문조사, '19.10.1.~15.)
 - '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' : 교원 40.7%, 학생 22.5%, 학부모 31.8%
 - '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' : 교원 22.9%, 학생 21.1%, 학부모 23.2%
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·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해왔으나,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
 - ☞ 부모-자녀 관계강화 등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, 마을(교육)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필요

Ⅲ. 정책 추진방향

비 전	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	
목 표	◇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◇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◇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	
5대 정책영역		14개 추진과제
1	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	1 학교·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·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
2	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	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
3	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	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·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
4	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	10 가해학생 교육·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
5	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	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
주요 신규 정책과제		
○ 일회성이 아닌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예방교육('교과연계 어울림') 확대 ○ 초등 학년군별(초1~2/초3~4/초5~6)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('어울림') 및 '사이버 어울림' 확산 ○ 학교급·폭력유형별 맞춤형 '관계회복 프로그램' 보급 및 프로그램 활용 전문가 양성 ○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피해학생 의견수렴·환류체계 구축추진 ○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'특별교육 프로그램' 보급 등 가해학생 조치 내실화 ○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		

IV. 정책 추진과제

1

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

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

□ 주요 성과

- 안전 교과(단원) 신설 및 주요 교과에 '학교폭력 예방교육' 내용 반영('15)
-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(어울림 프로그램) 개발·적용 및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
 - ※ 어울림 프로그램 기본·심층 모듈 개발 및 1·2차 개정(총 96종)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기본·심층 모듈 개발(4종)
 - ※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: ('14) 502교 → ('19) 4,506교
- 학생이 주체가 되는 또래상담 운영학교 확대
 - ※ 또래상담 운영학교 : ('15) 6,732개교 → ('16) 7,713개교 → ('17) 7,919개교 → ('18) 8,205개교

□ 환경 분석

- 언어폭력,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 증가와 초등학생 학교폭력 경험 증가 등 학교폭력 추세변화에 적극적 대응 필요
 - ※ '학교폭력 실태조사' 결과
 - 언어폭력 : ('14) 34.6% → ('19) 35.6% / 집단따돌림 : ('14) 17.0% → ('19) 23.2%
 - 초등학생 피해응답률 : ('16) 2.1% → ('17) 2.1% → ('18) 2.8% → ('19) 3.6%
-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
- AI,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기술 활용 가능성 확대

□ 정책 방향

- 학생의 참여·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
- 예비 및 현직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
- 민관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

추진 과제	학교·학급 단위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 내실화	1-1-1. 학교폭력 예방교육·활동 내실화 1-1-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장착근 지원
	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	1-2-1. 학생들이 직접 기획·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1-2-2.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
	학교폭력 유형·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	1-3-1. 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회·정서역량 함양 교육 강화 1-3-2.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1-3-3. 장애학생·다문화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강화
	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	1-4-1. 민관협력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1-4-2. 유관기관 지원을 통한 언어폭력·사이버폭력 예방 강화

1-1 학교·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

1-1-1. 학교폭력 예방교육·활동 내실화

□ [신규] 학교수업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건 조성 (교육부, 교육청)

-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교과수업 시간에 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('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') 확대
 - 수업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수업지도안, 학생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
 - ※ ('19) 국어·도덕·사회 既 개발 → (~'22) 영어·체육·기술·가정 → (~'24) 진로·한문
-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실시,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등 교원 대상 다양한 예방교육 역량 강화방안 마련
 - 시·도교육청별 예방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예방교육 담당 교사와 교과교사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, 학습동아리·연구회 운영을 지원
 -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연구대회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
 - ※ (예시) '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'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

□ [신규] 교육과정 속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강화 (교육부)

- 교과수업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
 - 국어, 도덕 등 교과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교과수업과 연계하고 고교학점제에 맞는 예방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육과정 간 단계적인 연계방안 검토
 - ※ (예시) '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'의 학생활동지를 교과서와 연계하고, '교육심리' 등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심리·상담분야 진로교육과 예방교육 연계
-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부담이 되는 다양한 법령상 의무교육* 간 유사내용 분석을 통해,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수 확보 지원
- * '학교폭력예방법'의 학교폭력 예방교육, '성폭력 방지법'의 성폭력 예방교육, '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'의 7대 안전교육 등

1-1-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장착근 지원

□ [신규] 학교구성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(교육부, 교육청, 학교)

-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교원 지정 및 연수 추진
 - 단위학교에서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기획·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예방교육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전문연수 제공
 - ※ 예방교육 전담교사 (원격·집합)연수비율(목표) : ('20) 20% → ('22) 50% → ('24) 100%
 - 교원 직위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연수 실시
 - (교장·교감)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, 학생·학부모·교사와의 상호 이해 및 대화방법 등
 - (담임·교과교사) 관계중심 생활교육, 비폭력대화, 교육과정 내 '교과연계 어울림' 연계방법 등
 - 다양한 학교구성원(학생보호인력, 영양사 등)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
 - 이미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, 학교폭력 발생·목격 시 대응방법 안내 중심으로 교육 내실화 추진
 - 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 - 교·사대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예비교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
 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, 학교 생활문화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교직과목에 반영
- #### 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(교육부)
- 단위학교의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,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자료 등의 수집·분석을 통한 현장적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 - ※ 학교폭력예방 누리집('도란도란')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자료 수집
 -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분석하여, 학교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'어울림 프로그램' 운영모형 개발·보급

□ [신규]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(교육부)

- 학부모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 활성화 지원
 - 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 등 학교활동 참여 학부모 대상 '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*' 온라인연수 안내, 분기별 학교폭력 예방 뉴스레터 보급 등 교육 자료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성 제고
 - * 공감·의사소통, 감정조정, 학교폭력 인식·대처 및 갈등해결 등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, '학부모On누리' 누리집에서 원격으로 수강 가능
-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(여가부 부모교육 전문가 306명 등) 양성 규모 확대 및 교육 내실화 추진

1-2 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

1-2-1. 학생들이 직접 기획·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

-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대 (교육부, 방통위, 여가부, 경찰청)
 - 영상콘텐츠, 웹툰 제작 등 체험활동 중심 동아리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
 - ※ '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사업'(교육부), '한국인터넷드림단'(방통위) 등
 - 학생 스스로 또래학생을 상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래상담 학교,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내실화
 - 또래상담학교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또래상담 컨설팅 확대 및 또래상담 동아리·운영학교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
 - 기존 '명예경찰소년단'을 개편하여, 동급학생이 또래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추진
 - ※ '명예경찰소년단' 운영 현황('19) : 초등·중학교 265개, 학생 3,556명
 - 위(Wee)클래스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
 - ※ '친구사랑주간', '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주간' 등 학교상황에 맞는 자율적 예방활동 운영 중

1-2-2.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

- 체험·참가형 프로그램 확대 (법무부, 경찰청, 교육부)
 - 학생들의 토론·참여를 통해 학교 내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'학생자치 법교육 프로그램' 확산

- '어린이 로스쿨', '모두가 행복한 교실' 등 초등·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
-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관서를 확대하고,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역할극, 심리상담 등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
 - ※ '20년부터 경찰학교 교육편성 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중점 편성
- 인공지능(AI, Artificial Intelligence)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체험형 예방교육 추진
 -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직접 체험하며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, AI 등을 활용한 '적극적 방어자' 되기 프로그램 등 게임형 교구형식의 교육자료 개발·보급
 - ※ (~'22) 교육자료 개발 → ('23) 시범운영 → ('24) 효과성 평가 후 확산

□ 학생 정서순화를 위한 활동중심 프로그램 운영 지원 (교육부, 산림청)

- 학생의 정서 안정, 창의성 계발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(숲으로 가는 행복열차, '유이숲체험원', '한국숲사랑청소년단' 등) 지속 운영
- 1학생 1예술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·지역리그·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지속 지원

1-3 학교폭력 유형·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

1-3-1. 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회·정서역량 함양 교육 강화

-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(방통위, 교육부)
 - 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을 위한 '바른인터넷유아학교'* 지속 운영
 - * 유아 눈높이에 맞춘 공연교육(인형극), 디지털교구를 활용한 강사파견형 교육
 -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, 학년군별(초1~2/초3~4/초5~6) 학교폭력 예방교육('어울림')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 확산
 - ※ ('19) 2,418교 → ('20) 모든 초등학교

□ 사회·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(교육부, 교육청)

-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지원자료(사회관계 영역 '더불어 생활하기')를 활용한 유아의 사회·정서역량 강화 추진
- 초등학생 맞춤형 가족동반 예방활동('체험형 밥상머리교육') 운영

1-3-2.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

□ [신규]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산 지원 (교육부, 방통위)

- 사이버 상 공감·의사소통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배양에 중점을 둔 초·중등 맞춤형 '사이버 어울림' 프로그램을 모든 초·중·고에 확산
※ ('19) 4,506교 → ('20) 모든 초·중·고
- (초등) SNS상 피해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이버상 공감·의사소통 등 역량을 배양하여,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·행동 개선을 유도
- (중등) 교과별 교육과정·성취기준과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연계하여 교과수업 중심의 심층교육 실시
- 교육현장의 사이버폭력 예방·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
-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를 통한 교장·교감, 일반교사,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·대응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실시

□ [신규]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(방통위, 법무부, 경찰청, 교육부)

- 초등학생 맞춤형 교구활용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산
※ 중·고등학생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용 교구 개발·보급 추진
- 유관기관 전문강사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
-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순회교육 실시
-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
- 위(Wee)센터별 사이버폭력 예방·상담 담당자 지정 후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
※ 사이버폭력 사례 안내 및 대응법 연수, 치유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
※ 위(Wee)센터 담당자 교육 이수비율(목표) : ('20) 10% → ('22) 30% → ('24) 50%

□ 집단폭력·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(경찰청, 교육부, 여가부)

- 집단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 예방교육 강화
- 학생들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양성평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
-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수립하고,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·자료 개발 및 보급
-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,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

□ 인터넷 윤리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 실시 (방통위, 문체부, 교육부, 과기정통부)

- 사이버폭력 예방, 자녀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활용 유도 등을 위한 학부모 대상 '밥상머리인터넷 윤리교육' 운영
- 온라인상 언어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게임이용 에티켓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지속 추진
- 학생들의 미디어 이해·활용능력 계발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
- 스마트폰 바른사용 역량강화 및 ICT 분야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'청소년 바른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' 운영

1-3-3. 장애학생·다문화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강화

□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환경 조성 (교육부)

- 장애·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,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
※ ('20) 고등학생용 → ('21) 유치원생용 (초·중학생용 교육자료는 이미 개발 완료)
- 장애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'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' 운영 지원

□ [신규] 다문화학생에 대한 존중문화 조성 (여가부, 교육부)

-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심리·사회적 문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또래상담자(학생)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
- 학생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해, 학교폭력 예방 '어울림 프로그램'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반영

1-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

1-4-1. 민관협력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

- 문화예술을 활용한 민간 지원 예방활동·캠페인 운영 (교육부)
 - 학교폭력 예방 UCC, 창작동요 공모전 등 민간의 참여와 지원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
 - ※ 월드컵전 ‘교실에서 찾은 희망’, EBS ‘블러썸 청소년영상제’ 등
 - 문화예술 치유기반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지원 확대
 - ※ GS칼텍스 ‘마음톡톡’ 지원 사업

1-4-2. 유관기관 지원을 통한 언어폭력·사이버폭력 예방 강화

-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 중심 언어문화 개선활동 확대 (문체부, 교육부)
 - 청소년이 스스로 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, 민간, 방송사 등이 협력하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(‘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’ 등) 추진
 -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(언어폭력 예방 특별수업, 공모전 등 실시), 콘텐츠 크리에이터(유튜버 등)와 연계한 캠페인 등 언어폭력 예방활동 추진
 - 뮤지컬·캠페인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(방통위)
 -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중심 예술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(‘찾아가는 교육뮤지컬’) 추진
 - 민관 협력을 통해, 사이버폭력 예방 및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온·오프라인 캠페인 추진
 - ‘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’*, 창작동요제 등 참여형 캠페인 운영, 인터넷 윤리 체험관 및 사이버폭력 예방 체험부스 운영 등
- * 사이버폭력 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윤리 조성을 위해, 매년 약 1~2주간 카드 뉴스,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온·오프라인 캠페인 실시

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

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

- 주요 성과
 - 학생·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및 주기적 학교폭력 실태조사(연 2회)로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 증가
 - ※ 신고비율(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): ('17) 78.8% → ('18) 80.9% → ('19) 81.8%
 -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지속 확대
 - ※ 학생보호인력(배움터지킴이, 민간경비 등) : ('14) 13,379명 → ('19) 24,968명
 -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9.8.20. 공포)
 - ※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('19.9.1. 시행),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('20.3.1. 시행)
- 환경 분석
 - 집단 따돌림, 사이버 폭력 등 쉽게 감지가 어려운 유형의 학교폭력 증가
 - ※ ‘학교폭력 실태조사’ 결과
 - 집단따돌림 : ('14) 17.0% → ('18) 17.2% / 사이버폭력 : ('14) 9.3% → ('18) 10.8%
 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역할 및 조정 기능 강화 필요
 -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의 사안조사 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및 심의과정의 효율성·전문성 제고 필요
- 정책 방향
 - 학교폭력의 조기 감지 및 대응역량 강화
 - 학교폭력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착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
 -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

추진 과제	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	2-1-1.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2-1-2.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한 대응 강화
	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	2-2-1. ‘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’ 정착 지원 2-2-2. 학교의 교육적 대응역량 강화 2-2-3.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의 학교폭력 전담여건 조성
	사안처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	2-3-1.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역량 강화 2-3-2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착을 위한 지원

2-1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

2-1-1.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

□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조기 감지 지원 (교육부)

- 담임교사의 학기 초 학교폭력 징후파악 지원
 - 旣 개발되어 ‘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’에 수록된 학교폭력 진단 체크리스트의 현실적합성을 확인하여 개선·보완하고, 학기 초 학생상담 또는 수업 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용 활성화
 - ※ 자녀의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도 개발
-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단위 실태조사 문항 개발 등 ‘학교폭력 실태조사’ 개선·보완방안 마련
 - 조사참여율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(‘22년 차세대 NEIS 구축 시 적용), 시·도 및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문항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듈형 문항 개발, 특수학교용 문항 개발 등

□ [신규]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 구축 (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방통위)

-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신속한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* 보급 추진
 - * AI,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, 이상행동 및 폭력 상황 등을 스스로 감지하고 알릴 수 있는 CCTV
 - ※ (~’21) 국립학교 시범운영 → (’22~)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
- 청소년상담1388 ‘솔로봇’*을 활용한 온라인상 학생 상담서비스 운영
 - * 애니메이션, 게임 형식의 각본(시나리오) 기반의 가상 상담서비스
- ‘스마트 안심드림’*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
 - * 자녀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수신되거나, 자녀가 특정 단어(자살, 왕따, 가출 등) 검색 시 해당 단어를 감지하여 부모에게 알림

2-1-2.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한 대응 강화

□ 학교 안팎 자원을 활용한 학교폭력 조기대응 강화 (교육부, 여가부, 경찰청)

- 117 신고·상담센터의 신고·상담기능 지속 개선 및 홍보 강화

- 피해학생이 치료·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신속하게 안내하고, 사이버 폭력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(연 200명) 실시
- ※ 학생들은 ‘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’ 정책을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(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설문조사, ’19.10.1.~15.)
- 학교폭력 피해 신고접수 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개입·지원

【신속한 개입·지원(예시)】

- ◆ 피해발생 초기 담임교사, 전문상담교사, 업무담당 교사, 학교전담경찰관 협업을 통해 피·가해학생 분리
- ◆ 심리적 치유·요양을 위한 피해학생의 결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

2-2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

2-2-1. ‘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’ 정착 지원

□ [신규] ‘학교장 자체해결제’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 (교육부, 교육청)

-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관련된 법령, 지침 등 안내를 위한 ‘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’ 주기적 개정·보급
- 학교장 자체해결제 컨설팅, 사안처리 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

【학교장 자체해결제】

법률상 일정요건*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, 피해학생·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시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

- ①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□ [신규] 교원 연수 등 맞춤형 현장지원 추진 (교육부)

-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·보급 등 자체해결제 운영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
- 학교장 자체해결 시 NEIS를 활용하여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학교 업무부담 경감방안 마련
- ※ 차세대 NEIS 구축 시(’22.2. 개발완료 예정) 학교폭력 업무프로세스 포함 추진

2-2-2. 학교의 교육적 대응역량 강화

□ [신규] 학생 간 관계회복 활성화 지원 (교육부, 교육청)

- 맞춤형 '관계회복 프로그램' 개발·보급
 - 피해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피·가해학생 간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별·폭력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교원의 교육적인 학교폭력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
 - 교원 대상 '관계회복 프로그램' 활용안내서 개발·보급
 - 지역·학교별 프로그램 활용 전문가를 양성하여 단위학교 컨설팅 및 교원대상 연수 요원으로 활용
 - ※ (~'20.3) 프로그램 개발 → ('20.3~) 교원 대상 프로그램 활용안내 연수(연 약 200명)
- '관계회복 프로그램'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 - 교육(지원)청·학교별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'관계회복 프로그램'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폭력예방 누리집(도란도란)에 탑재

□ [신규] 교원의 학생상담 역량 배양 (교육부, 교육청)

- 담임교사 대상 상담역량 강화 연수 추진
 - 교육연수원, 위(Wee)센터·클래스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초기와 사안처리 후 학생상담 실습이 가능한 연수기회 제공

【참고】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연수 개요

- (연수목적) 학생들의 사이버폭력·언어폭력·도박,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
- (연수대상/시간) 교장·교감 및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등 / 학기별 2시간
- (주요내용)
 - 학교폭력 관련 법·제도 내용 및 학교폭력 발생 초기 학생상담 방법 등 대응 요령
 - 사이버폭력,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 발생 시 학생상담 방법

- 예비교원의 상담 역량 함양을 위한 교·사대 교육과정 보완 추진
 - 학생 및 학부모 상담, 진로상담 관련 내용을 교직과목에 포함

2-2-3.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의 학교폭력 전담여건 조성

□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(교육부, 교육청)

-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제도화 추진
 - 현재 시·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비 지원 등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의 수업시수 경감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
 - ※ 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'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조승래, '19.3.)

-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대상 치유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
- 시·도교육청 협의를 거쳐, 학교폭력 예방·대응 기여 교원 대상 승진 가산점제* 개선 검토
 - * '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' :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교원(학교별 교원 정원의 40% 내외) 대상으로 승진가산점(0.1점/년) 부여

□ [신규]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(교육부, 교육청)

- 생활지도 분야 '수석교사제' 도입 검토
-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단위학교별 복수 책임교사제도 운영방안 도입 추진(희망 교육청 대상 시범운영)
 - ※ (예시)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을 2인(책임/부책임) 이상 지정하여, 책임과 부책임이 1년간 공동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 후 부책임이 책임이 되고 부책임은 새로 지정
-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역량개발 지원
 -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 간 학습공동체 형성 지원,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학습연구년제 선발 시 우대 등

2-3 사안처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

2-3-1.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역량 강화

□ 사안조사 과정의 전문성 확보 (교육부, 교육청, 경찰청)

- 교육지원청 변호사 등을 통해, 단위학교 교원 대상 법률자문 운영
 -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, 전담기구 운영, 가해학생 조치이행 담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
-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
 - ※ 개정된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의 전문성 확보 필요
- 성 사안·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협조체계 구축

□ 학교구성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(교육청)

- 교원 직위별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연수 실시

【교원 직위별 연수내용(예시)】

- ◆ (교장·교감) 관리자 연수에 학교폭력 관련 제도 이해, 예방·대응역량 교육 포함
- ◆ (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) 학교폭력 관련 법·제도 이해,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전담기구 운영방안, 사안조사 방법 등
- ◆ (일반교사)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,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방법, 학생·학부모 상담 방법, 사안조사 방법 등
- ◆ (예비교원) 학생·학부모 상담방법, 학교폭력 예방역량 등

- 기숙사, 운동부 합숙소 등을 운영·관리하여 학교폭력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의 교장·교감을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실시

2-3-2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착을 위한 지원

□ [신규]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 (교육부, 교육청)

-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
 - 법률전문가, 청소년 전문가,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 담당 교원, 경찰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 확보
 - ※ 개정된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
- 학교폭력 사안 심의과정의 전문성·공정성 제고
 - ‘(가칭)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’을 개발·보급하고, 심의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
 - ※ (~'20.1) 매뉴얼 개발 → ('20.2~)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

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립 (교육부, 교육청)

-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타당성·충실성 확보
 -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, 필요 시 교육감 위탁 전문기관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전담기구 사안조사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
 - ※ (근거) 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11조의2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1조
- 중앙 및 교육(지원)청 단위에 피·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 분쟁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
 -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매뉴얼을 개발·보급하고, 민간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등 추진

3

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

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

□ 주요 성과

- 위(Wee)클래스·센터·스쿨 및 전문상담교사 등 학생 상담·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인력 대폭 증가

구 분	Wee프로젝트			전문상담교사
	Wee클래스	Wee센터	Wee스쿨	
2014	5,633교	188개소	9개소	2,099명
2019	7,233교	218개소	14개소	3,396명

-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를 위한 전담지원기관 확충

※ 전담지원기관 수 : ('14) 31개소 → ('19) 48개소

□ 환경 분석

-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*됨에 따라, 학생 한 명도 빠짐없이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필요
 - * ('17) 약 58.2만 명 → ('20) 약 54.6만 명 → ('25) 약 50.9만 명(통계청 '장래인구특별추계'(중위))
- 가족의 지원이 없는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사후지원이 어려우므로, 피해학생 보호자 대상 지원 필요
- 시·도별로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위(Wee)클래스 및 전담 지원기관 설치에 편차가 있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른 지원에 한계
 - ※ 위(Wee)클래스 배치율 주요지역 비교 : 대구 95.1%, 울산 85.5%, 전남 45.1%, 전북 30.3%
 - ※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대전(해맑음센터) 1개소

□ 정책 방향

-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요구를 파악하여, 초기부터 사후지원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방안 구축
- 피해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지원 내실화

추진 과제	피해학생 맞춤형 보호·지원체계 강화	3-1-1. 학교폭력 피해학생 초기단계 보호·지원 강화 3-1-2. 피해학생·보호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
	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	3-2-1. 피해학생·보호자 사후 지원체계 구축 3-2-2.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운영

3-1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·지원체계 강화

3-1-1. 학교폭력 피해발생 초기단계 보호·지원 강화

□ [신규] 피해학생 초기 보호체계 확립 (교육부, 교육청)

- 단위학교의 피해학생 초기 보호 역할 강화
 - 피해발생 초기 교원 간 협력강화를 위해, 전문상담(교)사, 담임교사, 업무담당 교사 등의 명확한 역할부여를 위한 연구, 직무분석 등 추진

【학교폭력 발생초기 교원 간 역할분담 방안(예시)】

- ◆ (상담(교)사) 학교폭력 발생 초기 학생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·보호자의 요구를 파악하고, 사안처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활용이 가능한 상담 내용·방법 등을 계획·안내하고 지원
- ◆ (담임교사) 학생상담 역량제고 연수 이수 후 상담교사의 안내·지원을 받아 학생상담 실시
- ◆ (일반교사)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,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용방법, 학생·학부모 상담 방법, 사안조사 방법 등
- ◆ (교장·교감) 학교의 피해학생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긴급보호조치 시행 및 보호자 면담, 학교외부 기관과 연계 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 총괄

- 피해학생 특성·상황 맞춤형 초기 보호·지원 모델(안) 개발·보급

【피해학생 초기 보호·지원 모델(안)(예시)】

- 피해학생·보호자 상담 등 긴급보호, 심리·법률·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
- 초기 보호조치로서 위(Wee)클래스·센터 긴급연계 및 보호, 필요시 교육청에서 긴급 상담비 우선 지원, 외부기관(피해학생 전담·지원기관,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) 연계,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등을 활용하여 피·가해학생 분리를 지원

□ [신규] 피해학생 가족 대상의 초기 심리치유 지원 (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)

- 단위학교 수준에서 전문상담(교)사가 학부모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 지원 (학교)
- 학교 밖 상담·교육기관*과 연계한 상담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·치유 지원 (학교)
 - * 건강가정지원센터(여가부), 위(Wee)센터 등

3-1-2. 피해학생·보호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

□ 피해학생 치유·상담 지원체계 확대 (교육부, 교육청)

- 지역 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의 확대·내실화
 - 피해학생 특성(연령, 피해상태 등)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가정형 위(Wee)*, 통학형·기숙형(대전 해맑음센터) 피해학생 보호기관** 등) 확대 및 내실화
 - * 가정폭력,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안전한 주거·교육 등을 제공
 - ** 피해학생 전담으로 일정기간 돌봄·치유·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
 - ※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(목표): ('19)48개소 → ('20)52개소 → ('22)56개소 → ('24)60개소

- 피해학생 치유·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상담기관 기능개편 및 전문상담(교)사 증원 추진

- 학생 상담 및 위(Wee) 프로젝트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

※ '가칭'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 제정 추진

□ 피해학생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공 (교육부, 여가부, 법무부, 복지부)

-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
 -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·보호자 대상으로 위(Wee)센터 출장 상담,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청소년 동반자)의 찾아가는 상담 등 지원
-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제공
 - '법률홈닥터',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자문 무료제공 추진
-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치료비 지급 등 지원 강화
 -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·보호자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치료비, 생계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
 - ※ 강력범죄는 아니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,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'긴급지원 대상자'로 선정될 시 원스톱 지원범위에 포함
 - 위기요인으로 인한 자살사고 유가족의 경우 법률 및 행정처리, 학자금, 임시주거비용,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
- 장애학생,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
 - 더봄학생* 지원을 확대하고, 장애학생 피해 발생 시 치료·보호 등의 연계를 위한 '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' 운영
 - *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등 지속적 관심·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
 - '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'를 통해 다문화학생 맞춤 정서·심리지원 실시
- 안전공제회의 피해학생 지원기준 명확화 추진
 - 시·도 안전공제회마다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지원기준을 명확화하고, 필요 시 안전공제회 선치료비 지급기준 완화 및 보상수준 상향 등 추진

【참고】 학교폭력에방법상 안전공제회 관련 조항

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~⑤ (생략)

⑥ 피해학생이...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...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
□ [신규] 피해학생 보호자 및 가족의 치유 지원 (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)

-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다양화
 - ※ (참고) 가족 중심의 피해 극복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하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‘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’
- 위(Wee)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한 가족동반 상담 지원서비스 제공
 - 전문상담(교)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통해, 관내 학생·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
 -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·가족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
 - ※ 부모교육, 가족상담,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

3-2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

3-2-1. 피해학생·보호자 사후 지원체계 구축

□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추수관리·지원체계 강화 (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경찰청)

- 보호조치 완료 후, 전문상담(교)사, 담임교사 중심으로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후속상담·지원 실시 (학교)
 - 피해학생별 특성 및 회복경과에 따른 맞춤형 추수관리, 일상 회복에 필요한 학습, 진로교육 등 다각적 사후지원 강화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또래학생의 관심을 통한 지지·지원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강화 추진
- ‘회복적 경찰활동’*과 연계한 피해학생 회복 지원
 - * 학교폭력 발생 시 당사자 간 갈등해결과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둔 경찰 활동

□ 피해학생 사후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 강화 (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복지부, 경찰청)

- 피해학생 보호조치 완료 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와 ‘청소년 안전망’을 연계한 주기적인 피해학생 상담·지원 사례회의 진행 등 협업 강화
-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·보호자·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·사후관리 강화
 - ※ (예시) 지역별 교육복지센터, Wee 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. 유관기관인 ‘청소년 안전망, 정신건강보건의센터, 청소년 경찰학교, 민간 전문단체 등의 인력이 한 팀이 되어 관내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 지원 제공

3-2-2.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운영

□ 민·관 협력을 통한 피해학생·보호자 치유·회복 지원 (교육부)

- 민간단체 및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
 - 스마트폰 기반 상담 프로그램 ‘상다미 쌤’(열린의사회, 다음카카오 협업), 학교폭력피해자 지원기금을 통한 피해자 통합지원(푸른나무 청예단) 등 민·관 협력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 시스템 지속 운영

□ [신규] 피해학생 의견을 반영한 지원체계 내실화 (교육부, 교육청)

-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피해학생 의견수렴 및 환류체계 구축 추진
 - ※ (~'21) 지원기관 유형별 이용만족도 조사도구 개발 → ('22~) 만족도조사 실시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*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·보완 검토
 - *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안 중 피해학생·보호자의 미동의로 ‘학교장 자체해결제’로 처리되지 않은 사안 집중분석

□ [신규]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 (교육부, 교육청)

- 피해학생 및 보호자 지원 관련 종합정보 제공
 - 각 부처 및 민간이 제공하는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 관련정보를 학교폭력예방 누리집(‘도란도란’)에 탑재하여 원스톱으로 제공
- 피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 대상으로 피해학생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의무화
 -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통지 시 피해학생 상담기관 및 전담 지원기관, 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포함

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

□ 주요 성과

-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정·운영 확대
 - ※ 특별교육 위탁기관(위(Wee)클래스·센터 제외) : ('13) 482개소 → ('18) 535개소
- 가해학생 보호자의 책무성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,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
 - 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'18.8.)
- 소년법상 '보호처분'을 받은 학생과 교사를 1:1 매칭하여 멘토링을 제공하는 '보호관찰멘토링' 운영 확대
 - ※ 보호관찰멘토링 참여교사 : ('14) 연 955명 → ('19) 연 1,075명

□ 환경 분석

-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특별교육기관 질 관리 필요
 - ※ 학교폭력 재발 건수 : ('16) 2,672건 → ('17) 3,250건 → ('18) 3,827건
-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성숙도가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,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필요
 - ※ 소년연령별 보호처분 현황('16) : (10세)0.32%, (11세) 8.64%, (12세) 22.39%, (13세) 66.38%

□ 정책 방향

-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, 가해학생 교육·선도조치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
- 촉법소년 연령 하향(만 14세 미만 → 만 13세 미만)을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 등 중대한 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기조 유지

추진 과제	가해학생 교육·선도 내실화	4-1-1.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개입 체계 마련 4-1-2. 가해학생 교육·선도조치 내실화 4-1-3.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4-1-4.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사후관리 강화
	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	4-2-1.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 4-2-2.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기반 마련

4-1-1.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개입 체계 마련

□ [신규]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피·가해학생 분리방안 마련

(교육부, 경찰청, 학교)

- 가해학생 초기 교육·선도체계 구축
 - 학교폭력 발생 초기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,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역할 명확화를 위한 직무분석 연구 등 실시

【학교폭력 발생 초기의 역할분담(안)(예시)】

- ◆ (업무담당 교원) 학생상담 역량제고 연수를 이수하고, 가해학생 교육·선도 지원
- ◆ (학교전담경찰관) 학교폭력 가해학생 면담을 통한 2차 학교폭력 발생 방지
- ◆ (교장·교감) 학교의 가해학생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긴급 선도조치 시행 및 보호자 면담, 학교외부 기관과 연계 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 총괄

-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,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*, 통고제도** 등 활용

*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,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(소년법 제4조제2항)

**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, 학교장이 경찰·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(소년법 제4조제3항)

4-1-2. 가해학생 교육·선도조치 내실화

□ [신규] 가해학생 조치별 실효성 제고 (교육부, 교육청, 학교)

- 가해학생의 충실한 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
 - 가해학생 조치* 1~3호 조치 학생부 기재유보 정책에 따라 조치 미이행 시 학생부 기재
 - * 가해학생 조치 : (1호) 서면사과, (2호) 접촉·협박·보복금지, (3호) 교내봉사, (4호) 사회봉사, (5호) 특별교육, (6호) 출석정지, (7호) 학급교체, (8호) 전학, (9호) 퇴학
 - 교내·사회봉사 일수, 특별교육 시수 미충족 등 가해학생 조치 거부·기피 시 추가조치를 부과하여 가해학생 교육·선도효과 제고

※ (근거)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(가해학생 조치 거부·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)

- 가해학생 조치별 내실화 방안 마련
 - 사회봉사 조치가 교육·선도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, 교육(지원)청 중심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발굴 추진
 - ※ (예시)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: 자치구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청에 ‘청소년봉사활동 지도사’ 배치
 - 출석정지 시 특별교육을 병과하는 등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조치 내실화
 - 사이버상 2차 가해 방지를 위해,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·SNS 등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 추진
 - ※ 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오영훈 의원, '19.4.)

□ **보호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가해행위 재발방지** (교육부, 법무부, 교육청)

-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다양화·내실화
 - 법무부에서 既 개발한 ‘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’ 매뉴얼 보급을 확대하고,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가족동반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활성화
-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방안 다양화
 - 특별교육 기관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교육, 야간·주말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이수방안 마련

4-1-3.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

□ **[신규]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** (교육부, 교육청)

-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학교급별·가해유형별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일반적 상담 중심의 현행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가해학생의 학교급과 가해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·보급
 -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

- 특별교육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
 - 특별교육 위탁기관에서 내실 있게 가해학생 특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형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
 - ※ (~'203) 프로그램 개발 → ('203~) 특별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활용안내 연수(연 약 200명)

□ **[신규] 특별교육기관 관리 강화 및 확대** (교육부, 경찰청, 여가부, 법무부)

-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 추진
 - 시·도교육청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, 위탁기관 지정·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·보급하고, 기관 평가도 추진
 - ※ ('20) 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 → ('21~) 운영기관 평가 및 환류
 - 특별교육기관의 교육 담당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용방안 연수
 - ※ 既 개발된 법무부 ‘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’ 활용안내 병행
- ‘청소년경찰학교’, ‘청소년비행예방센터’, ‘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를 활용하여 특별교육기관 확대 및 다양화
- 교육(지원)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담당자를 지정하여, 특별교육을 신속하게 의뢰하고 가해학생 사후관리까지 연계

4-1-4.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사후관리 강화

□ **교원의 협력을 통한 가해학생 사후관리** (교육부, 교육청, 법무부)

-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 또는 담임교사 중심의 가해학생 사후관리 (학교)
 - 가해학생 조치 이행완료 후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태도변화를 확인하여 필요시 전문상담(교)사, 위(Wee)센터 상담의뢰 등 관리체계 강화
 -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대상으로 교사와 1:1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‘보호관찰멘토링’ 사업 내실화 추진

□ **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가해학생 사후관리 강화** (경찰청, 여가부, 복지부, 교육부)

-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 대상 집중관리
 - 학교폭력 가해자 중 재차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 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 사후관리 추진
- 경찰 선도프로그램 이수 학생을 ‘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, 맞춤형 사후관리 실시
- 심리·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해학생의 경우 외부기관과 연계한 후속상담 등 사후관리 강화
 - ※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(여가부), 정신건강복지센터(복지부) 등과 연계

- 가해학생 대상 '대학생 멘토링' 시범사업 추진
 - 교·사대 졸업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'교육봉사'를 활용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들을 가해학생 멘토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
 - ※ (~'21) 사업모델 개발 → (~'23) 시범운영 → ('24~)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

4-2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

4-2-1.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

□ [신규]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(법무부, 교육부, 경찰청)

- '학생전담 보호관찰관' 제도 도입 추진
 - 소년법상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관리
- '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' 인증제* 활성화
 - * 경찰청 전문수사관 인증제 : '06년부터 경찰청에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 수사 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, '19년에 학교폭력 분야 인증이 새로 추가

□ [신규]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(법무부)

-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*하고,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(14세 미만→13세 미만)을 위한 법령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 추진
 - * 초범인 소년범이라도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소년사건 처리지침」 시행 중

4-2-2.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기반 마련

□ [신규] 사법조치 후 교육·선도를 통한 재발방지 (여가부, 법무부)

- 청소년회복지원시설* 직원 대상 교육·컨설팅 제공으로 운영 내실화
 - * 소년법상 '감호위탁'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·주거·학업 등을 지원하여 비행·탈선 예방 및 가정·사회 복귀를 돕는 생활시설(전국 20개소)
- '청소년비행예방센터' 체제 정비 및 지원 강화
 - 비행청소년 교육·선도 기관인 '청소년비행예방센터' 운영 내실화 및 미설치 지역 대상 '찾아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' 운영 추진
 - ※ '20년 2개 지역(충남, 경기북부)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설치 예정

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

□ 주요 성과

-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('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') 교육 운영
 - ※ 교육 수혜인원 : ('16) 50,232명 → ('17) 60,611명 → ('18) 60,054명
- 시·도교육청 평가의 '안전한 학교 구현' 영역(배점 17점)에 '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' 지표(배점 5점) 반영

□ 환경 분석

- 교원·학생·학부모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'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'과 '폭력적인 문화 및 대중매체의 영향'으로 인식
 - ※ '학교폭력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'에 대한 응답 결과(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설문조사, '19.10.1.~15.)
 - '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' : 교원 40.7%, 학생 22.5%, 학부모 31.8%
 - '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' : 교원 22.9%, 학생 21.1%, 학부모 23.2%
- 지방자치·분권이 강화됨에 따라,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 예방·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참여유도 필요

□ 정책 방향

-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교육이수 유도방안 마련
- 마을(교육)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참여 확대 추진

추진 과제	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	5-1-1. 부모-자녀 관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5-1-2.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
	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	5-2-1.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5-2-2. 학생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강화
	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	5-3-1.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활성화 5-3-2. 대국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및 홍보 추진

5-1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

5-1-1. 부모-자녀 관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

- 학생 대상 '좋은 부모 되기' 교육 실시 (교육청, 교육부, 여가부)
 -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수업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 활성화 추진
 - ※ (예시) 대전시교육청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'청소년을 위한 좋은 부모 되기 교육'을 실시 중이며, 향후 초·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
- 학부모 대상 자녀이해교육 실시
 - 정부부처, 지자체 중심으로 직장교육을 통해 부모-자녀 간 의사소통 등 부모역할교육 실시
 - ※ (예시) '가족친화인증기업'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 자료 제공

5-1-2.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

- [신규] 부모교육 참여 접근성 강화 (교육부, 여가부)
 -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·오프라인 교육 운영
 - 영상,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, SNS·유튜브, 가정통신앱 등을 통해 보급
 -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모교육 전문강사*의 (예비) 학부모 교육 실시
 - * '부모교육 전문강사'를 활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교육 실시
- [신규] 부모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 (교육부, 문체부, 지자체 등)
 -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참여자에게 국립중앙박물관·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을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유인 체제 구축 추진
 - ※ ('20) 교육이수 증빙체계 구축 → ('21~) 국립중앙박물관·국립현대미술관 적용
 -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동아리 등 자발적 학부모모임 지원 추진

5-2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

5-2-1.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성화

- [신규]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·대응 자치역량 강화 (교육청, 교육부, 지자체, 문체부, 여가부)
 - 지역위원회·협의회와 연계하여 마을(교육)공동체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, 지역주민 대상 교육·홍보활동 추진
 - 학교폭력 예방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, 마을 단위의 회복적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는 등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
 -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(노래방, PC방 등)의 업주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·대처방법 교육 및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활동을 통한 청소년 폭력·예방 대응방안 마련
 - 다양한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, 지자체 '청소년안 전망팀'* 단계적 확대 추진
 - *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고,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총괄
 - ※ ('20) 9개 지자체 선도사업 운영 → ('21~) 단계적 확대 추진

□ 학교폭력 예방·대응 평가를 통한 참여 내실화 (교육부, 행안부)

- 지자체, 시·도교육청 평가에 학교폭력 대책 추진사항 포함 추진
- '학교장 자체해결제', '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' 도입 등 '학교폭력예방법' 개정(19.8.)에 따른 '학교알리미'의 학교폭력 관련 공시사항 정비 추진

5-2-2. 학생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강화

- 학생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(교육청, 지자체)
 - 지역별·학교별 여건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·운영 지속
 - 학교주변 등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안전호출벨 설치,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추진

- **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강화** (교육청, 경찰청, 지자체, 방통위, 문체부, 여가부)
 - 우범·취약지역, 학교 주변 유해환경, 폭력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'교육환경보호구역'을 설정하고, 학교·경찰·지자체와 정기적 합동점검 실시
 - 청소년유해정보 확산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'청소년보호책임자' 지정의무제 운영 및 운영실태 점검
 - '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', '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' 운영
 - 온라인상 학교폭력 가해영상·사진 감지 및 대응 강화
 - 온라인에 게시된 학교폭력 가해영상·사진 발견 시 경찰·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

5-3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

5-3-1.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활성화

- **정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** (교육부)
 -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내실화방안 마련
 -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일반자치단체(시·도)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여, 학교폭력 예방·대응정책 수립·이행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참여 내실화
- **[신규] 데이터 기반 학교폭력 정책 수립·추진 체계 구축** (교육부)
 - 학생폭력과 관련된 증거기반 정책(evidence based policy) 수립·추진을 위해 '학교폭력 데이터 분석센터' 설치 추진
 -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, 법·제도적 개선·보완 필요사항 발굴부터 학교폭력 예방·대응 정책의 지향점 제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,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수집·분석

- 학교폭력예방 누리집('도란도란')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(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), 한국교육학술정보원(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), 한국교육개발원(위(Wee)특임센터)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플랫폼 구축

5-3-2. 대국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및 홍보 추진

- **학교폭력예방 주간 지정, 전국민 캠페인 참여** (부처 합동)
 - 매년 3월을 학교폭력 예방주간 지정하고 학교폭력 예방행사(리본, 키링, 손목밴드 착용 등)를 기획하여 전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국적 캠페인 실시 검토
 - ※ 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'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김삼화, '17.9.)
 - ※ (참고) 세계보건기구의 '담배없는 세상 만들기'를 위한 '블루리본' 뱃지달기 캠페인
- **민간기업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** (교육부)
 - 페이스북, 다음, 구글,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무로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참여 유도

붙임1

부처별 추진과제 현황

과제	소관부처
1.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	
1-1. 학교·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	
1-1-1 학교폭력 예방교육·활동 내실화	교육부, 교육청
1-1-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장착근 지원	교육부, 교육청
1-2. 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	
1-2-1 학생들이 직접 기획·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	교육부, 방통위, 여가부, 경찰청
1-2-2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	법무부, 경찰청, 교육부, 산림청
1-3. 학교폭력 유형·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	
1-3-1 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회·정서역량 함양 교육 강화	방통위, 교육부, 교육청
1-3-2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	교육부, 방통위, 법무부, 경찰청, 여가부, 문체부, 과기정통부
1-3-3 장애학생·다문화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강화	교육부, 여가부
1-4.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	
1-4-1 민관협력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	교육부
1-4-2 유관기관 지원을 통한 언어폭력·사이버폭력 예방 강화	문체부, 교육부, 방통위
2.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학교 교육적인 대응 강화	
2-1.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	
2-1-1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방통위, 경찰청
2-2.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	
2-2-1 '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' 정착 지원	교육부, 교육청
2-2-2 학교의 교육적 대응역량 강화	교육부, 교육청
2-2-3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의 학교폭력 전담여건 조성	교육부, 교육청
2-3. 사안처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	
2-3-1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역량 강화	교육부, 교육청, 경찰청
2-3-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착을 위한 지원	교육부, 교육청
3.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	
3-1.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·지원체계 강화	
3-1-1 학교폭력 피해발생 초기단계 보호·지원 강화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

과제	소관부처
3-1-2 피해학생·보호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법무부, 복지부
3-2.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	
3-2-1 피해학생·보호자 사후 지원체계 구축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경찰청, 복지부
3-2-2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운영	교육부, 교육청
4.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	
4-1. 가해학생 교육·선도 내실화	
4-1-1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개입 체계 마련	교육부, 경찰청, 학교
4-1-2 가해학생 교육·선도조치 내실화	교육부, 교육청, 학교, 법무부
4-1-3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	교육부, 교육청, 경찰청, 여가부, 법무부
4-1-4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사후관리 강화	교육부, 교육청, 법무부, 경찰청, 여가부, 복지부
4-2.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	
4-2-1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중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	법무부, 교육부, 경찰청
4-2-2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기반 마련	여가부, 법무부
5.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	
5-1.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	
5-1-1 부모-자녀 관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	교육청, 교육부, 여가부
5-1-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	교육부, 여가부, 문체부, 지자체 등
5-2.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	
5-2-1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성화	교육청, 교육부, 지자체, 문체부, 여가부, 행안부
5-2-2 학생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 강화	교육청, 지자체, 경찰청, 방통위, 문체부, 여가부
5-3.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	
5-3-1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활성화	교육부
5-3-2 대국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및 홍보 추진	교육부, 부처합동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추진 내용(목표)			담당부처
			'20	'21~'22	'23~'24	
1.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						
1-1	학교·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	○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('교과연계 어울림') 운영 확대	국어·도덕·사회 연계	영어·체육 기술·기정 연계	진로·한문 연계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 강화	예방교육 컨설팅단 구성·운영, 교수학습동아리 연구회 운영 지원 등	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육과정 간 단계적 연계강화 검토	장기 검토	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수 확보를 위한 법령상 의무교육 분석 추진	교육시수 분석	교육시수 정비 추진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교원 지정 및 연수	20%	50%	100%	교육부
		○ 교원 직위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연수	교원 연수			교육부
		○ 학생보호인력, 영양사 등 학교구성원 예방교육 내실화	교육자료 정비	교육자료 보급		교육부
		○ 교·사대 교육과정 개편 연계, 예비교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	교·사대 교육과정 개편 시 연계	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·확산	학교폭력예방 누리집 활용 우수사례 발굴 등			교육부
		○ '어울림 프로그램' 운영모형 개발·보급	연구학교 성과·우수사례 분석 등			교육부
		○ 학부모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 활성화 지원	뉴스레터 개발	온 오프라인 교육 실시		교육부
		○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사 운영 확대·내실화 추진	여가부 부모교육 전문가사 등 활용			교육부
1-2	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	○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				
		- '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사업'	120교	120교	120교	교육부
		- '한국인터넷드림단'	450교	450교	450교	방통위
		○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학교,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내실화	우수사례 발굴, 운영학교 컨설팅 등			교육부, 여가부
		○ '명예경찰소년단' 개편	청소년경찰학교 활용, '또래지킴이 역량강화' 교육			경찰청
		○ 위(Wee)클래스 활용, 학교별 학생참여 예방활동 운영(자율)	'친구사랑주간' 등 자율운영			교육청
		○ 학생자치 법교육 프로그램 확산	약 800교	약 800교	약 800교	법무부, 교육청
		○ 초·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				
- '어린이 로스쿨' 운영(복지부 소관 지역아동센터 대상)	약 70개소	약 70개소	약 70개소	법무부		
- '모두가 행복한 교실' 운영	약 120교	약 120교	약 120교	법무부		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'20	'21~'22	'23~'24	담당부처
1-2	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	○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확대 및 내실화	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	관서 확대 추진		경찰청
		○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체험형 예방교육자료 개발·보급	교육자료 개발		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	교육부
		○ 학생 전인적 성장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지속 운영				
		-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운영	25회	25회	25회	교육부
		- 유아숲체험원 운영	176개소	180개소	184개소	산림청
		-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체험 활동 추진	약 8,000명	약 8,000명	약 8,000명	산림청
○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	약 3,000팀	약 3,000팀	약 3,000팀	교육부		
1-3	학교폭력 유형 및 추세에 대응하는 예방활동 강화	○ '바른 인터넷 유아학교' 운영	약 100교	약 100교	약 100교	방통위
		○ 초등 학년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('어울림') 프로그램 확산	모든 초등학교			교육부
		○ 누리과정 현장 지원자료를 활용한 예방활동 추진	모든 유치원			교육부
		○ 초등학생 맞춤형 가족동반 예방활동('체험형 밥상머리 교육') 운영	약 100회	약 100회	약 100회	교육청
		○ 초·중등 맞춤형 '사이버 어울림' 프로그램을 모든 초·중·고 확산	모든 초·중·고등학교			교육부
		○ 교장·교감, 교사, 장학사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원격연수 실시	약 10,000명	약 10,000명	약 10,000명	교육부
		○ 교구활용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산	초 500교 (중·고등용 개발)	초·중·고 약 600교	초·중·고 약 600교	방통위
		○ 유관기관 전문강사 활용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				
		-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초·중·고 순회교육	약 300회	약 300회	약 300회	방통위
		-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	약 1,500회	약 1,500회	약 1,500회	경찰청
		○ 위(Wee)센터별 사이버폭력 예방·상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	20%	30%	50%	교육부
		○ 학교전담경찰관 활용, 집단폭력·성폭력 특별 예방교육 강화	모든 초·중·고			경찰청
		○ 학교급별·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·자료 개발 및 보급	교육자료 개발·보급			교육부, 여가부
		○ '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' 운영	약 60,000명	약 60,000명	약 60,000명	방통위
		○ '올바른 게임이용 교육' 운영	약 10,000명	약 10,000명	약 10,000명	문체부
○ '청소년 바른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' 운영	2개 지자체(미정)	운영 지자체 확대 추진		과기정통부		
○ 장애이해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·보급	고등학교용	유치원용		교육부		
○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운영	모든 유·초·중·고			교육부		
○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이해를 위한 또래상담자 양성	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활용			여가부		
○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반영한 '어울림 프로그램' 운영	교육자료 개발	모든 초·중·고		교육부		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'20	'21~'22	'23~'24	담당부처
1-4	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	○ 민간 참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				
		- 월드컵전 '교실에서 찾은 희망' 확대	약 1,200교	약 1,300교	약 1,400교	교육부
		- EBS '블러썸 청소년영상제' 확대	약 120교	약 160교	약 200교	교육부
		○ GS칼텍스 '마음톡톡' 지원 사업 확대	2개 교육청 (서울·경기)	운영	교육청 확대 추진	교육부
		○ 언어문화 개선('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' 등) 운영	100교	100교	100교	문체부
		○ 언어문화개선 주간, 콘텐츠와 연계한 언어폭력 예방활동 추진	언어문화개선 공모전, 특별수업 운영 등			교육부
		○ 학생 체형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('찾아가는 교육뮤지컬') 추진	100교	100교	100교	방통위
○ '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', 창작동요제 등 참여형 캠페인 운영	온·오프라인 캠페인, 창작동요제 운영 등			방통위		
2.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						
2-1	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	○ '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'의 학교폭력 진단 체크리스트 개선·보완	체크리스트 개선·보완	학부모용 개발·보급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·보완(모듈형, 특수학교용 문항개발, 모바일조사 도입)	문항 개발	모바일조사 도입		교육부
		○ 지능형 CCTV 보급	국립학교 시범운영	확대 검토		교육부, 교육청
		○ '솔로봇' 활용 온라인상 학생 상담서비스 운영	상담콘텐츠 지속 확대 추진			여기부
		○ '스마트 안심드림'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	1,840교	2,150교	2,500교	방통위
		○ 117 신고·상담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	200명	200명	200명	교육부
○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간 정보공유 활성화	정보공유 강화내용 협의	협의사항 안내 ('사안처리 가이드북' 활용)		교육부, 경찰청		
2-2	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	○ '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' 주기적 개정·보급	주기적 개정·보급			교육부
		○ 학교장 자체해결제 컨설팅, 사안처리 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	연중			교육청
		○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·보급	우수사례 발굴	우수사례집 발간·보급		교육부
		○ NEIS 활용, '학교장 자체해결' 결과보고 시스템 구축	시스템 개발	시스템 운영		교육부
		○ 학생 간 '관계회복 프로그램' 개발·보급 및 교원 대상 연수				
		- '관계회복 프로그램' 및 프로그램 활용 안내서 개발·보급	프로그램 보급	프로그램 운영		교육부
		- 교원 대상 프로그램 활용 안내서 개발·보급 및 연수	약 200명	약 200명	약 200명	교육부
		○ 담임교사 대상 상담역량 강화 연수	연수자료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	연수 실시		교육부, 교육청
		○ 교·사대 교육과정 내 학생 및 학부모 상담, 진로상담 관련 내용 포함	교·사대 교육과정 개편 시 연계	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수업시수 경감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	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			교육부
○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대상 치유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	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			교육청		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'20	'21~'22	'23~'24	담당부처
2-2	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	○ 학교폭력 예방·대응 기어 교원대상 승진·가산점제 보완방안 마련	현장 의견수렴	보완방안 마련		교육부
		○ 생활지도 분야 '수석교사제' 도입 추진	현장 의견수렴	제도 개편 추진		교육부
		○ 단위학교별 복수 책임교사제도 운영방안 도입	현장 의견수렴	시범운영	확대 검토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역량 개발 지원	학습공동체 지원, 학습연구단체 우대 등			교육청
2-3	사안처리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	○ 교원지원청 변호사 등을 통해 단위학교 교원 대상 법률자문 운영	연중			교육청
		○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	연중			교육부, 교육청
		○ 성 사안·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-학교전담경찰관 간 협조체계 구축	세부사항 협의	협조체계 운영		교육부, 경찰청
		○ 교원 직위별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연수	연중			교육청
		○ 학교폭력 발생위험이 높은 학교의 교장·교감 대상 특별 컨설팅	연중			교육청
		○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전문성 확보	연중			교육청
		○ '(가칭)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' 개발·보급 및 연수				
		- 운영 매뉴얼 개발·보급	매뉴얼 보급			교육부
		- 심의위원회 위원 연수	연중			교육부, 교육청
		○ 단위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강방안 마련	교육청 협의			교육부, 교육청
○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매뉴얼 개발·보급 및 연수						
- 분쟁조정 매뉴얼 개발·보급	매뉴얼 보급			교육부		
- 심의위원회 위원 연수	연중			교육부, 교육청		
3.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						
3-1	피해학생 맞춤형 보호·지원체계 강화	○ 단위학교의 피해학생 초기 보호역할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	직무분석			교육부
		○ 피해학생 특성·상황 맞춤형 초기 보호·지원 모델(안) 개발·보급	모델(안) 개발·보급			교육부
		○ 피해발생 초기 전문상담(교)사의 피해학생 학부모 상담 및 학교 밖 연계	연중			교육청
		○ 지역 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 확대	52개소	56개소	60개소	교육부, 교육청
		○ '(가칭)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 제정 추진	법률 제정 추진			교육부
		○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'찾아가는 상담' 지원	연중			교육부, 여기부
		○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제공	연중			법무부
		○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치료비 등 지원 강화				
		- 범죄피해지원센터 중심 치료비·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	연중			법무부
		- 위기요인으로 인한 자살사고 유가족 대상 상담·사후관리 등 지원	연중			복지부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'20	'21~'22	'23~'24	담당부처
3-1	피해학생 맞춤형 보호·지원체계 강화	○ 장애학생,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				
		- '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' 운영		연중		교육부
		- 다문화학생 맞춤 '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' 정서·심리지원 실시		연중		교육부
		○ 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지원기준 명확화 추진	지원기준 연구·안내	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및 가족 회복 프로그램 다양화	신규 프로그램 개발	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		교육부
	○ 위(Wee)센터·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활용, 가족동반 상담 지원		연중	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	
3-2	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	○ 보호조치 완료 후 피해학생·보호자 대상 후속상담·지원 실시		연중		교육청
		○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또래상담자 역할강화	또래상담자 역할강화 연구			여가부, 교육부
		○ 회복적 경찰활동과 연계한 피해학생 회복 지원		연중		경찰청
		○ 단위학교·'청소년 안전망' 연계, 피해학생 상담·지원 협업강화		연중	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
		○ 유관기관 연계 학생·보호자·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·사후관리 강화		연중		교육부, 교육청, 여가부, 복지부, 경찰청
		○ 민간 협력을 통한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 ('상다미빕', '푸른나무 침예단')		연중		교육부
		○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추진	조사도구 개발	조사 실시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안 사례분석 추진		사례분석 연구		교육부, 교육청
		○ 피해학생·보호자 지원정보 학교폭력예방 누리집('도란도란') 탑재		연중		교육부
		○ 피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 대상 지원기관·프로그램 안내 의무화	'사안처리 가이드북' 개정			교육부, 교육청
4.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						
4-1	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교육·선도 내실화	○ 단위학교의 가해학생 초기 교육·선도역할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	직무분석			교육부
		○ 우범소년 송치제도, 통고제도 활용		연중		경찰청, 교육청
		○ 가해학생 조치이행 유도방안 마련	교내·사회봉사 등 기피 시 추가조치 부과 등			교육청
		○ 가해학생 조치 내실화 방안 마련				
		- 교육(지원)청 중심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발굴 추진		연중		교육청
		- 출석정지 시 특별교육 병과 등 교육방법 마련 조치 내실화		'사안처리 가이드북' 개정		교육부, 교육청
		-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사이버상 접근도 포함토록 법령 개정		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		교육부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'20	'21~'22	'23~'24	담당부처
4-1	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교육·선도 내실화	○ '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' 매뉴얼 보급 확대		연중		법무부, 교육부
		○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방안 다양화	이수방안 개발			교육부, 교육청
		○ 학교급별·가해유형별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	프로그램 보급	프로그램 운영		교육부
		○ 특별교육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	가이드라인 보급			교육부
		○ 특별교육 위탁기관 지정·운영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 및 기관 평가	가이드라인 보급	기관평가 실시		교육부, 교육청
		○ 특별교육기관 확대 및 다양화				
		- 청소년경찰학교 중 특별교육기관 지정·운영	5개소	15개소	25개소	경찰청, 교육부
		○ 교육(지원)청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담당자 지정		연중		교육청
		○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 및 담임교사 중심 가해학생 사후관리 추진		연중		교육청
		○ 보호관찰멘토링 사업 내실화 추진	내실화 방안 마련			교육부, 법무부
		○ 학교전담경찰관 중심,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 대상 사후관리 추진		연중		교육청
		○ 심리·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해학생 대상 외부기관 연계 사후관리		연중		교육청, 여가부, 복지부
		○ 가해학생 대상 '대학생 멘토링' 시범사업 추진	사업모델 개발	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		교육부, 교육청
4-2	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업정대처	○ '학생전담 보호관찰관' 제도 도입	운영방안 협의	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		법무부, 교육부
		○ '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' 인준제 활성화		단계적 확대운영		경찰청
		○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		형법·소년법 개정 추진		법무부
		○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직원 대상 컨설팅 등 운영 내실화		연중		여가부
		○ '청소년비행예방센터' 체제 정비 및 지원 강화	2개 설치	운영 내실화 및 지원강화		법무부
5.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						
5-1	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	○ 고등학생 대상 학교수업 등을 활용한 부모교육 활성화 추진		연중		교육청
		○ 정부부처, 지자체 중심으로 부모역할 직장교육 실시		연중		여가부, 교육부
		○ 학부모 대상 온·오프라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		연중		교육부
		○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부모교육 전문강사의 (예비)학부모 교육 실시		연중		교육부, 여가부
		○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참여자 대상 교육 참여유인 체계 구축 추진	교육이수 증빙체계 구축	국립중앙박물관·국립현대미술관 적용	확대 검토	교육부, 문화부
		○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동아리 등 자발적 학부모모임 지원 추진		연중		교육청, 지자체

번호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	'20	'21~'22	'23~'24	담당부처
5-2	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	○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·협의회 연계, 마을(교육)공동체 중심 예방활동	2개 교육청	5개 교육청	8개 교육청	교육청, 지자체
		○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(노래방, PC방 등) 업주 대상 폭력예방 계도활동 실시	안내자료 개발	안내자료 배포		문체부
		○ 지자체 '청소년 안전망팀' 단계적 확대 추진	9개 지자체	확대 검토		여가부
		○ 지자체, 시·도교육청 평가 시 학교폭력 대책 추진사항 포함	연중			교육부, 행안부
		○ 지역별·학교별 여건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·운영	연중			교육청, 지자체
		○ 학교주변 '교육환경보호구역' 대상, 학교·경찰·지자체 합동점검 실시	연중			교육청, 경찰청, 지자체
		○ '청소년보호책임자' 지정의무제 운영 및 실태점검	연중			방통위
		○ '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' 운영	연중			문체부
		○ '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' 운영	연중			여가부
	○ 온라인상 학교폭력 가해영상·사진 감지 및 대응 강화	홍보자료 개발·보급	홍보 강화		방통위, 교육부, 경찰청	
5-3	전 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	○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	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			교육부
		○ '학교폭력 데이터 분석센터' 설치 추진	센터 설치·운영 세부방안 검토	센터 운영		교육부
		○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	유관기관 정보연계	온라인 플랫폼 운영		교육부
		○ '학교폭력 예방주간' 지정·운영 검토	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			교육부
		○ 페이스북,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의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참여 유도	연중			교육부